



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'개인정보 보호' 철저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정보보호)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및 제29조(안전조치의무)와 관련입니다.
3. 우리 위원회는 국가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민원·제안·각종 신고 등을 신청·처리할 수 있는 범정부 소통 포털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, 각급 기관에서 민원·제안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.
4. 최근 국민신문고 관련 언론보도 "국민신문고 글 올렸다가 신원 노출된 교직원 목숨끊어(SBS, JTBC, 중앙일보, 한국일보, 전남일보 등, 2018.12.25.)"와 같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인에게 유출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, **민원처리 기관에서는**
 ※ 참고로 민원정보 유출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**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**
이

<참고>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

법령명	내 용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	제7조(정보보호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	제3조(민원인 등의 정보보호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·점검하고,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고,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개인정보 보호법	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	<p>제71조(벌칙)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한다</p> <p>①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(생략)</p> <p>⑥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, 멸실, 변경, 위조 또는 유출한 자</p>
<p>「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준수사항」 (' 18.7.26 개정)</p>	<p>?붙임 2 개인정보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원인이 민원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, 민원내용에 개인정보, 고소?고발성 제보 등이 포함되 <p>어</p> <p>경우 비공유로 전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원내용 및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및 방치 등 금지 -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민원 열람 금지, 민원답변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주의 등

끝.

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



수신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관

주무관 **한명진** 행정사무관 **안철민** 국민신문고과장 **김기선** 전결 12/26

협조자

시행 국민신문고과-3879 (2018.12.27.) 접수 시민봉사담당관-28830 (2018.12.27.)
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(어진동) / www.acrc.go.kr
 전화 044-200-7263 /전송 044-200-7924 / ds4azm@korea.kr / 대시민공개